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16760 |
|------------|-------|

발의연월일 : 2018. 11. 23.

발의자 : 박정·송갑석·윤후덕
백혜련·박재호·김병기
이석현·송영길·김철민
윤호중·정성호·노웅래
의원(12인)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조달청 구매기준 12.8%)이 상승함으로써 창업기업 구매액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를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비율을 반영한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절차(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4, 제9조의5, 제44조 및 제5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 중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장에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중 “제43조에”를 “제9조의5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및 제43조에”로 한다.

제5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4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다음 해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 <p>제2조(정의)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공공기관</u>”이란 「<u>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공공기관</u>을 말한다.</p> |
| <p><u><신 설></u></p> | <p>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p> <p>① <u>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 중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p> <p>② <u>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u></p> |

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

<신 설>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
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

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

제44조(청문) -----
---제9조의5에 따른 창업기업
의 확인 및 제43조에-----

| | |
|--|---|
| <p>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생 략)</p> <p><u><신 설></u></p> <p>1. ~ 5. (생 략)</p> <p>7. (생 략)</p> <p>② (생 략)</p> | <p>-----</p> <p>-----</p> <p>-----</p> <p>-----</p> <p>-----</p> <p>-----.</p> <p>제50조(과태료) ① -----</p> <p>-----</p> <p>-----</p> <p>-----</p> <p>-----.</p> <p>1. <u>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